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결유)

제목 전세버스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알림

1.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 (시행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2020년 1월 1일, 전세버스운송사업 : 2020년 4월 2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2. 위와 관련하여 노선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2020년 4월 2일부터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관할관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각 시·도 조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붙임 참조)에 대해 안내하하는 등 시행일 이후에 운송사업자가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규정 1부. 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63호, 2019. 8. 27, 일부개정]

-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증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 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 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9. 18.]

부칙 <제16563호, 2019. 8.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앞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0. 4. 2] [대통령령 제30104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수사업

② 운수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중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수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수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

부칙 <제30104호, 2019.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1.> [유효기간:2018년 4월 24일]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8의2.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3호의2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28의3.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3호의3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비고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3. 감차 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들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 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들 우선 처분한다.
- 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 5.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 6.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다.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7.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8.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ext{가. 사고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사고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사고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text{나. 위반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위반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위반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9.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10.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정당한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하여 지급거절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11.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란 위 표 위반내용란의 제6호나목, 제9호나목, 제12호가목·라목, 제16호나목·라목 또는 제36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위반내용란의 제3호나목에 따른 감차명령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전부를 감차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운행계통이 하나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13.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내용란의 제3호바목5)에 따라 처분한다.

14.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6호마목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15.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10호다목, 제17호 및 제3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6. 위반내용란의 제19호에 따른 감차명령은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0. 1.> [유효기간:2018년 4월 24일] 제1호의 제18호허목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 버 스· 농어 촌버 스· 마을 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수요 응답 형
20의2. 별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별 제85조제1항 제23호의2	1차	60	60			60		
		2차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20의3. 별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별 제85조제1항 제23호의3	1차	60	60			60		
		2차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과 징 금 의 액 수		
		시 외 버 스 운 송 사 업 (운행형태별)		
		농어촌 버스운 송사업	고속	직행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1) 8명 이상 9명 이하		3,600	2,400	1,200	1,200
2) 5명 이상 7명 이하		2,400	1,600	800	800
3) 2명 이상 4명 이하		1,200	800	400	400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400	1,600	800	800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400

4.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6. 고의·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제12호, 제17호 및 제18호마목·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②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1.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2.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

부칙 <제677호,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